

보도 일시	2022. 11. 15.(화) 12:00 2022. 11. 16.(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15.(화) 12:00
담당 부서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김병익 (044-202-7561)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하였다.

◆ 대지급금 제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천 5백만원이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 부정수급 적발액(인원) : ('17년) 800백만원(137명) → ('18년) 756백만원(193명) → ('19년) 253백만원(73명) → ('20년) 220백만원(56명) → ('21년) 107백만원(26명) → ('22년 기획조사) 1,655백만원(263명)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후보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기획조사를 시작하였고, 이번에 10월 말까지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추가하여 신고하고, 임금체불액도 부풀려 신청하여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 ▲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 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하면서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 ▲ (위장폐업) 사업장을 위장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하여 대지급금으로 받은 사례

특히,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 ▲ 「대지급금(구.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포항고용노동지청, '22.8.12.)
- ▲ 「하도급업자들과 공모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중부지방고용노동청, '22.11.3.)
- ▲ 「간이대지급금 6억 7천여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전주고용노동지청, '22.11.11.)

☞ [참고2] 「주요 부정수급 사례」 참조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한 기존 방식과 달리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전체 대지급금 지급정보 및 체불 관련 사건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사 대상 후보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후보 사업장을 대상으로 바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범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시범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시 착안해야 하는 사항과 효과적인 조사 기법을 파악하였다.

이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장 회의를 통해 후보 사업장이 선정된 배경과 조사 착안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에 필요한 정보조회 등을 지원하며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기획조사와 함께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며,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시행하고, 노동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임금체불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요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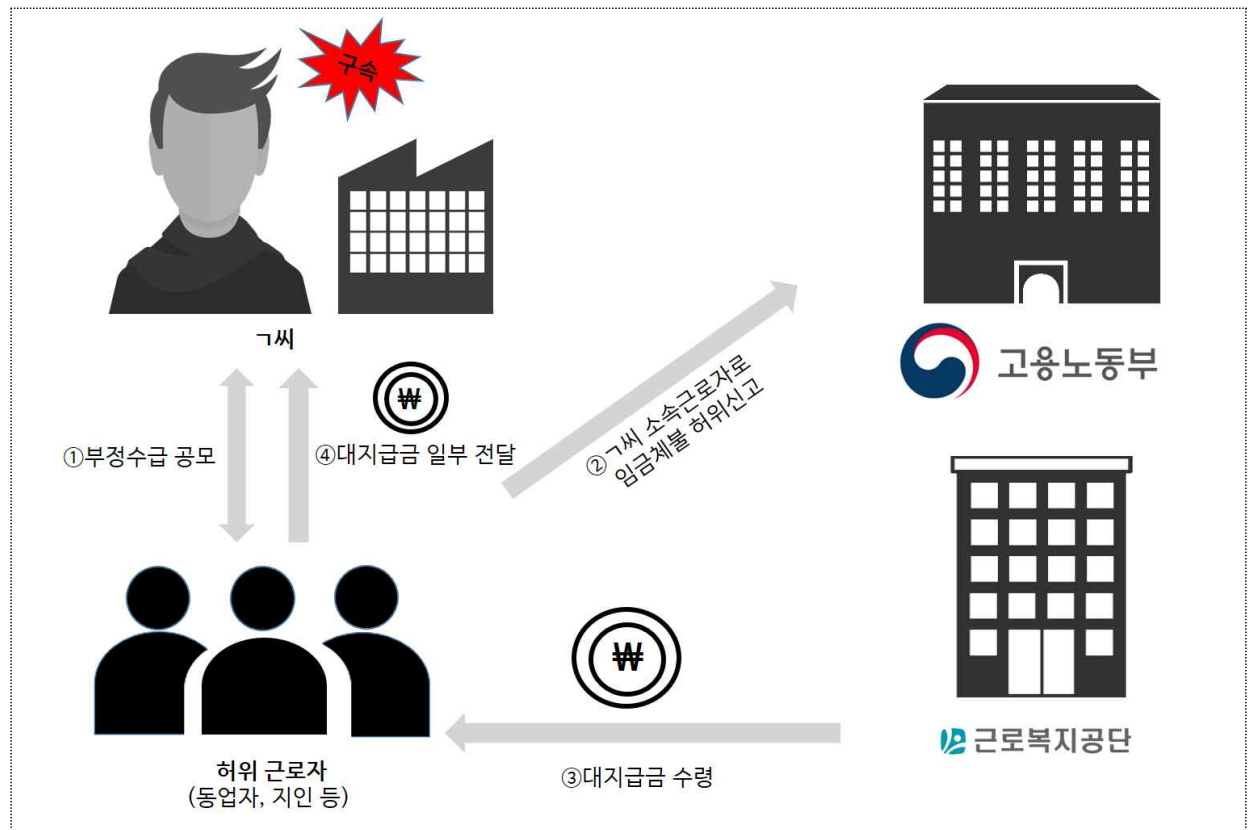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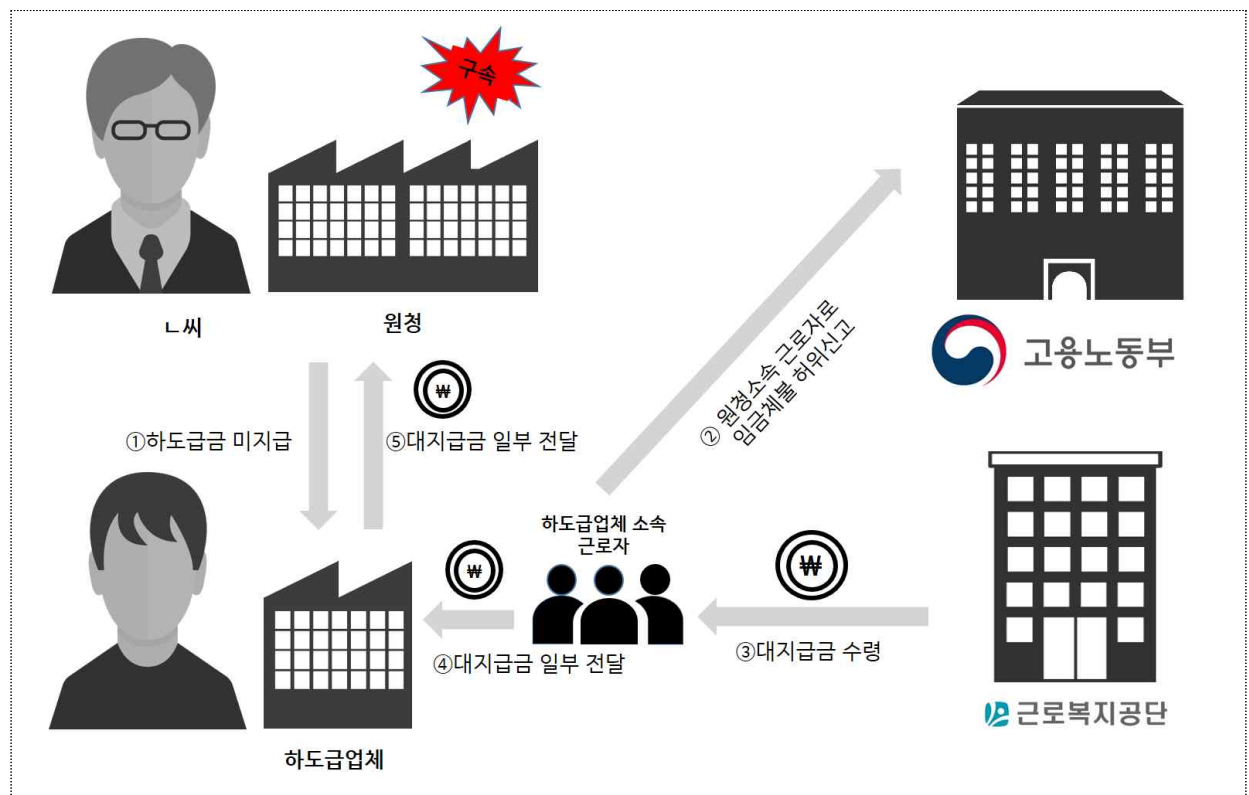
1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ㄱ 씨(8.12. 구속)

-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2백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ㄱ씨가 대부분 편취
 - 또한, ㄱ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도 드러남
- ㄱ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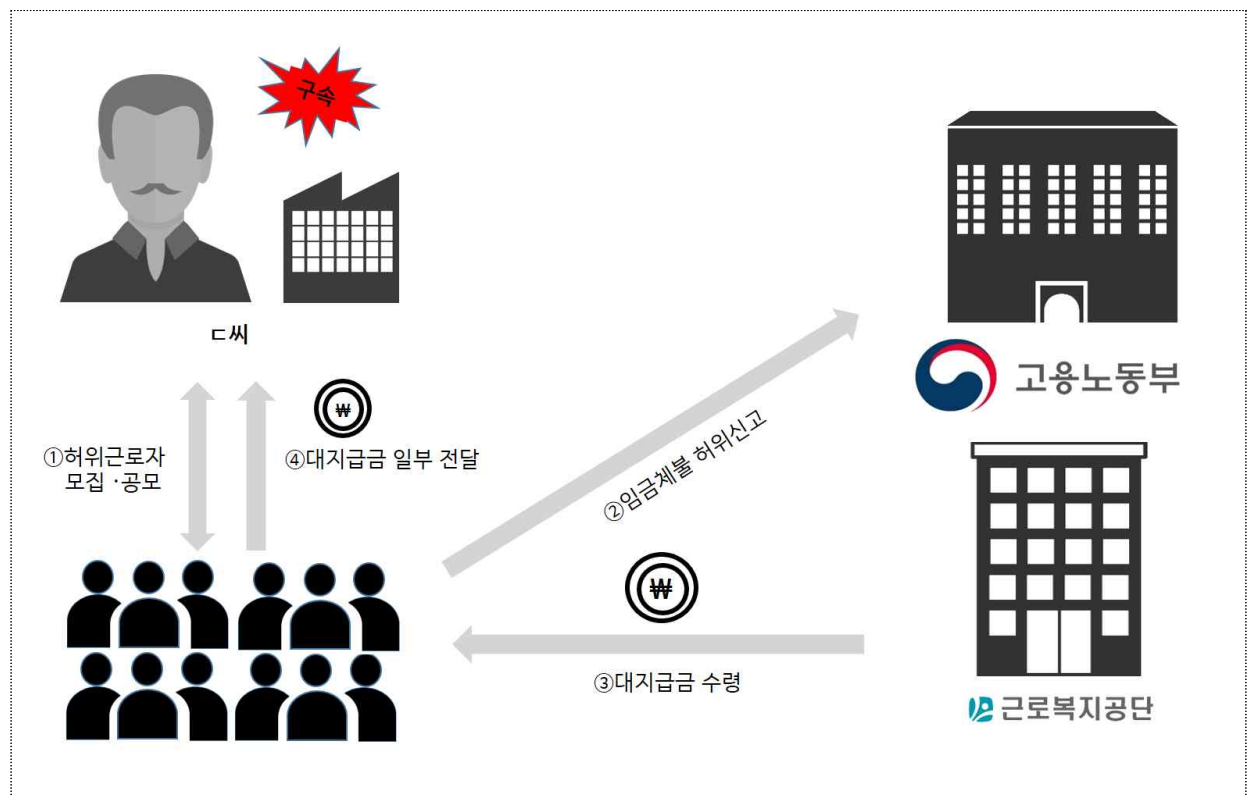
② 인테리어 업체 대표 L 씨(11.3. 구속)

- L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이 함께 4억8천9백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 L씨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일부를 회수하여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됨
- 수사 과정에서 L씨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자들이 모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 공범들에게 범죄사실 은폐·축소를 지시하는 수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참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에 이르게 됨



③ 목재가공 업체 대표 ㄷ 씨(11.11. 구속)

- ㄷ씨는 목재가공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직접 지인들을 동원하거나, 모집책을 통해 50여 명의 허위근로자들을 모집케 하고,
 - 허위근로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허위신고하게 하여 총 6억7천여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함
- ㄷ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채무가 있는 지인에게 접근하여, 나중에 자신이 변제하면 문제없다고 속여 부정수급에 가담케 하였고,
 - 수사가 시작되자 가담한 공모자들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할 것을 제안하고, 본인 역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하게 됨



□ 추진배경

- 대지급금을 고액으로 수급하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 독촉 등의 집중관리가 필요
 - － 사업장의 정보를 분석하여 변제금 미납액 규모가 크고 회수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관리 실시('22.4~10월, 근로복지공단)

□ 추진실적

- '22년 10월 말 기준 172개소에서 109억 6천만원 회수
- 대상 사업장에 대해 현장 출장독려, 재산조사 다양화 및 강제집행 실시 등으로 집중 관리
 - － 가동 중인 사업장의 경우 재무 관련 정보 및 매출처, 계좌정보 등을 확인하고, 분납 안내 및 납부 독촉 실시
 - －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영업보증금 등 미회수채권을 조사하고, 재산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추진

□ 향후계획

- 금년도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집중관리 실시 예정